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 내 조경은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화재로 인한 시설 손상은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산지 변전소에 대해서는 산불 확산 방지 및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지에 설치되는 변전소에 대하여 조경 기준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외벽, 옥상, 설비 공간 등에서는 유지관리·점검·보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유지관리 작업에 필요한 지지설비의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설계 단계에서의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불확산 및 대규모 정전 방지를 위한 산지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

산지 인근 변전소의 경우 부지 내 조경이 산불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변전소 설비 손실 및 정전 발생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가능함에 따라 산지 변전소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

나. 유지관리용 지지설비를 건축설비 범주에 포함

외벽, 옥상, 설비 공간 등 유지관리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① 제27조(대지의 조경) 제1항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에 위치하거나, 산지 경계와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건축물”

②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 중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를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유지관리용 지지설비 등 건축설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유지관리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건축설비(유지관리용 지지설비를 포함한다)의 안전 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의 조경 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생 략) 1. ~ 10. (생 략) 11. (신 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에 위치 하거나, 산지 경계와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건축물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생 략)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 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 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 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배 수·냉방·난방·환기·피뢰· <u>유지관 리용 지지설비</u> 등----- ----- ----- ----- -----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u>유지관리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건축설비(유 지관리용 지지설비를 포함한다)의 안전 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의 조경 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3772